

大邱直轄市達西區汚水糞尿및畜産廢水處理에關한 條例制定(案)審査報告書

1992. 11. 7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달서구청장
- 나. 제출일자 : 92. 9. 7
- 다. 회부일자 : 92. 9. 9
- 라. 상정일자 : 92. 9. 17
- 마. 재상정일자 : 92. 11. 7

2. 제안설명 : 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본 조례제정(안)은 92. 9. 17일자에 본 상임위원회에 상정 되었으나 자료미비로 유보된 안건이며 제출자료를 검토한바 91. 3. 8 법률 제4362호에 의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오수·분뇨및축산폐수를 적절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주민 보건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토론 요지

위원 간담회시 협의사항인 제4조 제2항 제4호의 내용중 분뇨의 수집, 은반시 주민이 직접 용량시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제10조 제2항 제2호의 내용중 분뇨 관련 영업에 대한 허가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며 제10조 제3항의 내용 말미에 단서 조항으로 "각 업종 별 대행업체는 2개이상 허가해야한다"를 추가삽입하여 분뇨관련 업체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 해소 및 업체의 대주민 서비스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정 조례안을 가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大邱直轄市達西區汚水糞尿및畜産廢水處理에關한 條例制定(案)審査報告書

1992. 11. 7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달서구청장
- 나. 제출일자 : 92. 9. 7
- 다. 회부일자 : 92. 9. 9
- 라. 상정일자 : 92. 9. 17
- 마. 재상정일자 : 92. 11. 7

2. 제안설명 : 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본 조례제정(안)은 92. 9. 17일자에 본 상임위원회에 상정 되었으나 자료미비로 유보된 안건이며 제출자료를 검토한바 91. 3. 8 법률 제4362호에 의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오수·분뇨및축산폐수를 적절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주민 보건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토론 요지

위원 간담회시 협의사항인 제4조 제2항 제4호의 내용중 분뇨의 수집, 은반시 주민이 직접 용량시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제10조 제2항 제2호의 내용중 분뇨 관련 영업에 대한 허가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며 제10조 제3항의 내용 말미에 단서 조항으로 "각 업종 별 내행업체는 2개이상 허가해야한다"를 추가삽입하여 분뇨관련 업체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 해소 및 업체의 대주민 서비스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정 조례안을 가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가. 찬성자 : 김정해 위원, 손영일 위원, 박이찬 위원, 하종수 위원, 김영수 위원, 이기도 (12명) 위원, 박병기 위원, 이종택 위원, 권춘갑 위원, 김창식 위원, 전부진 위원, 박양현 위원

나. 반대자 : 없음

(단, 허가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안에 대해서는 전부진 위원이 반대)

5. 수정안 요지

- 개정조례(안) 제4조 제2항 제4호 "수집, 운반 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 확보"를 "수집, 운반 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용량시설을 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하며 탈취시설 확보"로 수정
- 제10조 내용중 제2항 제2호 "허가기간 : 3년(변경허가시는 잔여기간)"을 "허가기간 : 2년(변경허가시는 잔여기간)"으로 수정하고 제3항의 추가내용인 단서사항으로 "각 업종별 대행업체는 2개이상 허가해야 한다"를 삽입.

6. 심사결과 : 수정 가결

7. 첨부 : 개정조례(안) 1부.

大邱直轄市達西區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關한條例(案)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제2조와 같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안의 분뇨및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유지 관리하고 처리방법을 개선하는등 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분뇨의 처리

제4조(분뇨의 처리) ①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분뇨를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영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분뇨수집 운반 또는 정화조등의 청소대행 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추정 청소량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 운반 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 확보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 영, 규칙과 이 조례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5 조(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 ①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은 분뇨수집 의무 제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 운반 의무 제외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단, 다수인이 모이는 국립공원등 관광지로서 특히 청결의 유지를 필요로 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1.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차량의 출입등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 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

제 6 조(분뇨처리시설 처리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구청장은 법 제19조 제6항에서 규정한 분뇨처리시설 처리수수료를 대구직할시 분뇨처리시설 처리수수료 징수등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허가한 분뇨관련영업자로 하여금 징수 대행케하여 시에 납부하게 하여야한다.

제 3 장 축산폐수의 처리

제 7 조(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의 비용부담)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당해시설의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축산폐수를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당해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그 처리를 위탁하므로써 축산업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안에서 축산업자가 배출하는 축산폐수의 양, 성상, 오염물질의 농도, 기타 배출방법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처리비용의 징수규정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 8 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안에서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용, 방법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서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가축사육 제한에 관하여는 구청장은 가축사육이 금지되는 일정한 지역은 미리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지역에서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⑤ 제4항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금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가축사육의 허가 등) ①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육장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2. 사육지 위치도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주민의 보건위생 및 주거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관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가축사육 허가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고 그 허가증을 교부받은 자는 이를 축사의 잘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 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자가 제2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분뇨관련영업의 허가등

제10조(분뇨관련영업)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영업구역 : 달서구 관할 (동)
2. 허가기간 : 3년 (변경허가시는 잔여기간)

③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분뇨발생량과 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자의 지역분포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④ 허가에 따른 기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11 조 (분뇨관련영업 요금) 법 제35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요금은 다음 각호 1과 같다.

1. 분뇨수집, 운반요금 : 18ℓ당 214원 (분뇨처리시설 수수료 1ℓ당 1원포함)

2. 정화조 청소요금

가. 기본요금 : 0.75㎡당 12,350원

나. 초과요금 : 0.75㎡당 초과시 0.1㎡마다 893원 가산

“주” 용량기준은 개별정화조 용량을 말하며 조내 청소비 및 분뇨처리시설 수수료 (1ℓ당 1원)가 포함된 요금임.

제 5 장 보 칙

제 12 조 (보고, 검사) 구청장은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재활용 하는자,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자의 처리실적을 보고 받을수 있으며, 당해시설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 장비등을 검사하게 할 규정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 13 조 (과태료 징수절차) 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징수하며, 기타 필요한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 14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행정처분등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대구직할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대구직할시 폐기물 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 대구직할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 3 조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요금의 경과조치) 대구직할시 폐기물 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
제2조 제1항 1호의 별표1중 분뇨수거료와 3호의 별표2의 오수 및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액
표는 자치구의 관련 조례가 공포시행 될때까지 대구직할시폐기물수집수수등징수조례에 의하
며, 달서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분뇨관련 영업요금으로 본다.